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 모양 고찰

『춘향전』과 『가체신금사목』을 중심으로

A Study on Women's Hairstyl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이윤석*

국문요약 소설에 들어 있는 내용은 대부분 그 소설이 만들어진 당시에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 크므로, 소설의 내용은 소설의 작자가 살던 시기의 사실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춘향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머리모양은, 당대의 머리모양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후기 머리모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19세기 초반의 머리모양을 연구하고 싶다면, 『춘향전』에 나타나는 머리모양을 도외시킬 수는 없다. 필자는 여러 종의 『춘향전』에 주석을 붙여 출판했는데, 이 작품에 들어 있는 여성의 머리모양 중에 '허튼머리'와 '사양머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 글에서 두 가지 머리모양을 알아보기 위해, 『가체신금사목』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검토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허튼머리'가 무엇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사양머리'는 현재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것은 밝혀냈다.

핵심어 춘향전, 가체신금사목(加體申禁事目), 머리모양, 허튼머리, 사양머리, 가체

* 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2. 『춘향전』의 ‘허튼머리’와 ‘사양머리’
3. 『가체신금사목』의 반포와 그 내용
4. 『가체신금사목』에 나오는 머리모양
5. 결론—가체(加髻)와 사양머리

1. 서론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 모양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복식이나 미용 연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간혹 한국사 전공자들도 이 분야 연구의 성과를 제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보면, 텍스트는 주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를 이용하고 있고, 그림은 단원이나 혜원 같은 화가의 풍속도나 조선말기의 사진 등을 이용하고 있다.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 모양에 대한 연구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이 약간의 해석이 달라지는 정도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설 연구자인 필자의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춘향전』으로, 『춘향전』이 판소리에서 나왔다는 ‘근원설화→판소리→판소리계소설’의 도식이 잘못임을 밝히는 연구를 계속해왔다. 『춘향전』의 원본은 19세기 초에 서울의 어떤 작가가 창작한 것이고, 이 작품은 서울의 세책집을 통해서 유통되었으며, 세책 『춘향전』은 서울이나 전주의 방각본 『춘향전』의 원천이라는 것이 필자의 이 방면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는 소설 『춘향전』의 재미있는 대목을 노래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힌 바 있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정밀한 독해가 필요하므로, 서울

의 세책과 전주의 방각본 『춘향전』을 주석하는 작업도 병행해왔다.

조선후기 고소설 가운데 『춘향전』은 여러 가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창작 당시의 조선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고소설이 먼 과거의 중국을 지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춘향전』은 전라도 남원이라는 지역을 지리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전라도 남원을 지리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의 세책 『춘향전』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일상이 잘 드러나 있다. 작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의 일상에서 소재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한 일이다. 세책 『춘향전』보다 반세기 이상 후대에 나온 전라도 전주의 『열녀춘향수절가』는 당대 전라도 지방의 일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책 『춘향전』을 잘 읽어보면, 19세기 초 서울에 사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식, 가옥 구조, 동식물, 의복, 여행, 군사, 기생, 각종 놀이, 민속, 노래 등등 각양각색의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 그런데 거의 200년이 된 과거의 정보이므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어렵다. 필자는 『춘향전』의 주석 작업을 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를 참고하는데,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근래에 세책 『춘향전』의 주석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몇 가지 머리모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튼머리’와 ‘사양머리’가 그것인데, 이 머리모양을 알아보기 위해 1788년에 반포된 『가채신금사목加髻申禁事目』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춘향전』은 『가채신금사목』

이 반포된 이후에 나온 작품이므로, 여기에는 가채금지 이후의 머리모양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을 통해 19세기 중엽에 ‘허튼머리’와 ‘사양머리’가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었는지 알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춘향전』의 ‘허튼머리’와 ‘사양머리’

소설에 들어 있는 내용은 대부분 그 소설이 만들어진 당시에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 크므로, 소설의 내용은 작자가 살던 시기의 사실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예는 쉽게 들 수 있는데, 세책 『춘향전』에서도 볼 수 있다.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여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장면에서, 남원의 왈짜들이 춘향을 감옥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있다. 남원의 왈짜들은 춘향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구리개에 가서 청심환을 사다 먹여야겠다고 말한다. 구리개는 현재 서울의 을지로 입구 부근으로, 조선후기에는 이 지역에 약방이 밀집해 있었다. 이 소설의 지리적 배경이 전라도 남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왈짜들이 약을 사러 가야겠다고 말하는 곳은 서울의 구리개인 것이다. 『춘향전』의 작자가 이 대목을 쓰면서, 작품의 지리적 배경이 남원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보다는, 이 작품을 읽는 서울의 독자들에게는 청심환을 사기 위해서는 구리개 약방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독자들에게 사실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머리모양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세책 『춘향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머리모양은, 당대의 머리모양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후기 머리모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19세기 초반의 머리모양을 연구하고 싶다면, 『춘향전』에 나타나는 머리모양을 도외시킬 수는 없다. 각종 『춘향전』에는 머리모양을 묘사한 대목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피차 평발 아이들이 야심 중에 기롱하니 무엇이 망발인가? 자네 뒤에 양반 두 자 씨 붙었나?^{남원고사}
- ② 사몽비몽 분별할 제, 흐트러진 십이운발 비녀 꽃기 잊었구나.^{남원고사}
- ③ 춘향 어미 거동 보소, 노랑머리 비껴 꽃고 몽당치마 둘러치고 옥바라지 다니다가^{남원고사}
- ④ 도련님 거동 보소, 옥안선풍 고운 얼굴 전반 같은 채머리 곱게 빗어 밀기름에 잠재워 궁초댕기 석황 물려 맵시 있게 잡아 땅고^{완판84장본}
- ⑤ 만수운환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거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장폐하여 죽거들랑^{완판84장본}
- ⑥ 감태 같은 채머리에 해남을 많이 발라 반달 같은 용얼레로 설설이 흘러 빗겨^{완판29장본}
- ⑦ 삼단 같은 제 머리를 나무꾼이 잔디뿌리 뜯듯, 빠드덩 빠드덩 쥐어뜯으며^{경판35장본}
- ⑧ 어떤 데는 떠꺼머리 아이놈 하여 얼렁뚱땅하니 어쩐 일이뇨?^{경판30장본}

위의 예문에 나오는 머리모양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의 평발은 관례^{冠禮}하기 전에 길게 땅아 늘인 머리인 편발^{編髮}이고, ②의 십이운발^{十二雲鬟}은 구름같이 풍성하고 열두 자나 되는 긴 머리라는 의미이며,

③의 노랑머리는 노인의 머리를 말한 것이다. ④의 전반 같은 채머리는 넓게
 땅은 술이 많은 머리이고, ⑤의 만수운환^{漫垂雲鬟}은 어지럽게 흐트러진 풍성한
 머리를 말하는 것이며, ⑥의 감태^{紺綵} 같은 채머리는 풍성한 검은 머리를 말한
 다. ⑦의 삼단 같은 제 머리는 술이 많고 긴 자기 머리를 말하며, ⑧의 띠꺼머
 리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땅은 머리를 말한다.

위에 나온 여러 가지 머리모양은 대체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비해, 세
 책 『춘향전』에 나오는 ‘허튼머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또 ‘사양머리’는 현
 재 ‘새양머리’와는 모양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책 『춘향전』에서 ‘허튼
 머리’와 ‘사양머리’가 나타나는 대목을 보기로 한다.

도련님 호스보쇼의복단장몹시있다삼단긋튼허튼머리반달긋튼화룡소로아조살
 〃홀니빚겨전반긋치넙게썩하슈갑스토막당기석우황이더욱조타^{『남원고사』1권제8-9장}

흑운긋튼허튼머리반달긋튼화룡소로아조살 〃홀니빚겨전반긋치넙게썩아옥농
 잠금봉츠로스양머리쪽저는디석우황진쥬투심산호가지휘얼근도토락당기몹시잇
 게다라시니천티산벽오지의봉황의소리로다^{『남원고사』1권제14장}

이를 현대어로 옮기면서 괄호 안에 한자를 넣으면 다음과 같다.

도련님 호사^{豪奢} 보쇼, 의복 단장 몹시 있다. 삼단 같은 허튼머리 반달 같은 화
 룡소^{畫龍梳}로 아주 살살 홀리 빚어 전반같이 넓게 땅아 수갑사^{繡甲紗} 토막당기 석
 웅^{石雄}황^黃이 더욱 좋다.

흑운黑雲 같은 허튼머리 반달 같은 화룡소畫龍梳로 아주 살살 흘리 빗어 전반같이 넓게 땡아 옥룡잠玉龍簪 금봉치金鳳釵로 사양머리 쪽 졌는데, 석웅황石雄黃 진주투심眞珠套心 산호珊瑚가지 휘엿은 도투락댕기 맵시 있게 달았으니, 천태산天台山 벽오지碧梧枝에 봉황鳳凰의 꼬리로다.

『남원고사』의 이 두 대목은 세책 『춘향전』의 이본인 동양문고나 동경대학에 소장된 이본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 위 두 대목의 같은 부분을 동양문고본·동경대학본은 동양문고본과 거의 같아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도련님 호사 보소. 삼단 같은 좋은 머리 해남을 많이 발라 전반같이 넓게 땡아 수갑사熟甲紗 토막댕기 석웅황石雄黃이 천도天桃 같다. 동양문고본1권제11장

흑운黑雲 같은 검은 머리 반달 같은 외룡소臥龍梳로 살살 빗겨 전반같이 넓게 땡아 옥룡잠玉龍簪 금봉치金鳳釵로 사양머리 쪽 졌는데, 석웅황石雄黃 진주투심眞珠套心 도투락 산호珊瑚댕기 천태산天台山 벽오지碧梧枝에 봉황의 꼬리로다. 동양문고본1권제18-19장

위의 인용문을 보면, 『남원고사』의 ‘허튼머리’는 이도령과 춘향의 머리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모두 나온다. 그런데 『남원고사』의 ‘허튼머리’가 동양문고본에서는 이도령을 묘사할 때는 ‘좋은 머리’로, 그리고 춘향을 묘사할 때는 ‘검은 머리’로 나온다. 춘향의 머리를 묘사한 ‘사양머리’는 『남원고사』와 동양문고본 두 이본 모두 쪽을 지고 땡기를 묶었다는 같은 내용이다.

복식이나 미용 연구자 중에 ‘허튼머리’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으나, 허튼머리를 ‘가체加髻’로 파악한 것을 볼 수 있다.

‘삼단 같은 머리채’, ‘구름 같은 허튼 머리’ 등의 조선 중기 이후 유행했던 윤기 나는 풍성한 얹은머리는 ‘가체’ 덕분이다. 가체는 오늘날과 같은 가발이 아니라, 남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본 머리카락과 함께 땡거나 등글게 하여 모양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⁰¹

그러나 『춘향전』에 춘향의 머리만이 아니라 이도령의 머리도 허튼머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허튼머리를 가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도령의 머리를 묘사할 때 ‘삼단 같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삼단 같은 머리채’를 ‘가체’로 볼 수는 없다. 허튼머리는 『춘향전』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몇 군데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 얼음 같은 누런 전모 자지갑사 끈을 달고 구름 같은 허튼머리 반달 같은 쌍얼레로 활활 빗겨 고이 빗겨 편월 좋게 땡아 없고한양가
- 섬섬옥수를 들어 각장장판을 두드리며 허튼머리 집어 꽃고 기절하여 울거늘삼설기
- 귀밑까지 허튼머리 반달 같은 와룡소로 슬슬 빗겨 등자 쪽으로 눌러 찌고양주소놀이곳
- 치마끈을 단단히 매고 허튼머리 귀밑에 드리고, 두 줄 비긴 눈물이 옷깃에 사무치며 엷어지며 자빠지며 붙들려 나갈 적에, 건넌집을 향하여 바라보며,
심청전일사본

위의 몇 가지 용례를 볼 때, ‘허튼머리’가 특정한 머리모양을 말하는 것인

01 송미경, 「멋스러움과 단아함을 위한 치장」, 국사편찬위원회 편,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두산동아, 2006, 294쪽.

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흐트러진 머리’라는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허튼머리는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가지 않았고, 또 연구자들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허튼머리와 함께 이 글에서 다루는 ‘사양머리’는 사전에 ‘새양머리’라는 표제어로 나타난다. 그리고 ‘새양머리’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몇몇 사전에서 새양머리를 설명한 것을 보기로 한다.

예전에, 여자아이가 예장禮裝할 때에 두 갈래로 갈라서 땡은 머리. 이것을 다시 틀어 올려서 아래위로 두 덩이가 지도록 중간을 땡기로 묶기도 하고, 틀어 감아서 비녀 같은 것으로 꽃기도 한다. ≡ 사양머리, 새양, 새양낭자, 생머리.표준국어대사전

미혼녀가 예복을 입을 때 두 갈래로 갈라서 땡은 머리모양. 머리를 뒤에서 두 가닥으로 갈라땡아 내린 뒤, 각각 밑에서부터 9cm 정도의 길이로 말아 올려 목 뒤에서 같이 묶고, 그 위에 땡기를 드리우는 형식을 하였다. 사양머리·생머리·사양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 시대, 나인들이 예장禮裝할 때 땡는 머리 모양. 머리털을 두 갈래로 갈라서 땡고 이것을 각각 틀어 올려 뒤통수 밑으로 나란히 세워서 위아래로 두 덩이가 지게 묶고 긴 땡기를 맨다.다음국어사전

현재 새양머리사양머리의 뜻풀이를 보면, 대부분 두 갈래로 땡은 머리를 묶는다고 되어 있는데, 『춘향전』에서는 두 갈래라는 말이 없이 쪽을 찢다고 했다. 그리고 예복을 입을 때의 머리모양이라고 했으나,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그

네를 탈 때의 머리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사양머리를 다룬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생머리’라는 명칭은 국말 낙선재 상궁들이 실제 사용하던 명칭인데 순화궁 관련 기록인 『덩미』와 『절차』에는 ‘스양의’와 ‘스양의’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른 기록에는 사양계, 스양머리, 새양머리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생머리’는 땀을 머리를 상하로 몇 번 접은 후 땀기 들어 묶은 머리인데 ‘생다리’라고 하는 가발鬘髻을 덧붙이기도 하였다.⁰²

이런 설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생머리’나 ‘새양머리’는 ‘사양머리’의 발음이 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3. 『가체신금사목』의 반포와 그 내용

3.1. 『가체신금사목』 반포 과정

‘가체’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영조 때에도 있었다. 영조32년¹⁷⁵⁶ 1월 16일 실록에는 “사족의 부녀는 가체加髻를 금지한다禁士族婦女加髻”는 대목이 있고, 가체의 대용으로는 족두리簇頭里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가체를 금지하는 명령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대부 집안의 사치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부인이 한 번 다리를 더하는 데가체加髻하는데 몇백 금을 쓰고, 머리에 올리는 다리를 크고 높게 하는 데 힘썼으므로, 왕이 이를 금지시

02 이은주,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 『복식』 58-3, 한국복식학회, 2008, 23쪽

킨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영조33년 12월 16일에는 “중외의 부녀들의 체계髻髻를 금하고 후계後髻로 대신하게 한다命禁中外婦女髻髻代以後髻”는 기사가 보인다. 그리고 이날 사치스러운 풍속을 억누르기 위해 영조가 윤음綸音을 지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윤음에는 높은 머리고계高髻를 금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상천인常賤人은 다리臺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족의 부녀는 가채加髻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다시 윤음을 지어, 사치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직물에 무늬 넣는 것을 금지했다. 이처럼 다리를 금지하고 족두리를 착용하라는 명령은 영조38년까지 여러 차례 보인다.

영조39년¹⁷⁶³ 11월 9일의 실록 기사를 보면, “다시 다리의 제도를 행하되 단지 가채加髻하는 것은 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命復行髻制而只禁加髻”는 내용이 있다. 영조가 이렇게 부녀자의 머리모양에 대한 명령을 반복한 이유는, 신하들 가운데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았고, 또 족두리도 사치스럽게 꾸미면 비용이 체계髻髻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영조의 가채금지령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 가채 문제는 다시 또 논의되었다. 정조3년¹⁷⁷⁹ 호조참판 송덕상宋德相이, 여염閭閻에서 체발髻髮하는 풍습을 엄금하고, 중국의 화관花冠을 쓰는 제도를 따라 사치를 제거할 것 아뢰었다. 정조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신하들과 더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문제는 송덕상이 시작한 것인데, 송덕상이 역적으로 몰려 죽으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정조12년¹⁷⁸⁸ 6월에 우통례右通禮 우정규禹禔圭가 상소하여 『경제야언經濟野言』이라는 책자를 올렸는데, 약 40여 조항의 사회개선책

을 수록한 것이었다. 이 책자에 들어 있는 ‘부인수식변통지의婦人首飾變通之議’라는 항목에서는, 부녀자들의 머리에 드는 비용이 많다는 것과 영조 때 이를 개혁하려던 일에 대해서 기술했다. 정조는 우정규의 제안을 묘당廟堂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8월 18일에 비변사에서 우정규가 올린 책자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뢰었는데, 그 첫 번째가 부인의 머리 장식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해 10월 3일 정조는 우정규가 상소한 체계髻髻에 관한 일에 대한 묘당의 논의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예조판서 이재간李在簡, 이조판서 정창순鄭昌順, 형조판서 이병모李秉模 등이 각자의 의견을 아뢰었다. 정조는 채제공의 말이 가장 정확하다며, 영조가 만든 가체加髻를 금지하는 제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당일에 비변사에서 ‘가체신금절목加髻申禁節目’을 올렸다.

10월 4일 『일성록』에는 정조가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견見한 자리에서 “체계髻髻를 금하는 사목事目을 이미 다 강구하였는가?”라고 물었다는 구절이 있다. 전날 비변사에서 ‘가체신금절목’을 올리자, 바로 다음 날 ‘가체신금사목’을 완성했느냐고 물은 것이다. 정조는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귀한 것이니, 만약 의논이 하나로 결론지어지기를 기다린다면 끝내 이루어질 가망이 없을 것이다. 모름지기 오늘 안으로 회동하여 사목을 바로잡아 들이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그러나 10월 5일 조정의 논의에서, 부녀자의 족두리 위에 품계에 따라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여기에 상당수의 신하가 찬성했다. 정조는 이에 대해 여덟 가지 불가한 이유를 대고, 족두리 위에 품계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체신금사목』의 원고는 10월 4일에는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8일에는 각신_{閣臣}에게 금체사목_{禁體事目}을 감인_{監印}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감인하는 각신 한 사람을 정하여, 인쇄하고 배포하는 일을 주관하도록 했다. 감인은 인쇄물을 원고와 대조하여 잘못된 글자를 바로잡는 일이니, 10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조판을 끝내고, 8일에는 교정을 본 것이다. 정조는 10월 9일에 1,500부를 인쇄하라고 명하였다. 그 사이에 정조는 한성판윤 서유방_{徐有防}에게 이르기를, 『가체신금사목』이 반포되기 전에 이 내용을 서울의 수모_{首母}⁰³들에게 알려주어, 사대부 집에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10월 8일 서유방은 수모 33명을 모아, 그 내용을 익힌 전의감_{典醫監}의 의녀_{醫女}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가르치게 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서울의 종로 거리에 백성을 모아놓고 가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알려주라고 한성판윤 서유방에게 지시했고, 서유방은 이대로 시행하고 보고했다.

정조¹⁷⁸⁸ 10월 12일에 총 2,176부의 『가체신금사목』을 배포했는데, 개인의 이름과 관서의 명칭이 일성록에 모두 나온다. 10월 12일 이후에도 더 인출했고, 지방에서는 이를 목판에 새겨 간행하여 나눠주기도 했으므로, 2천부가 훨씬 넘는 양을 간행했다. 『가체신금사목』은 논의가 시작된 10월 3일부터 9일 후에 인쇄한 책자를 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조는 일이 너무 늦어졌다고 말했다. 정조는, “18장의 책자를 만드는 일을 5, 6일이 지나도록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창준_{唱準} 여러 명을 경기도의 여러 읍에 정배_{定配}하고, 간행을 담당할 신하들도 문책했다.

03 수모(首母)는 수모(手母)로도 쓰는데, 혼례 때 신부의 단장과 시중 등을 맡은 여자를 말한다.

3.2. 『가체신금사목』의 내용

『가체신금사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임금의 명령인 전교傳敎, 두 번째는 임금에게 아뢰는 거조摺條, 세 번째는 이 법령의 각 조항인 절목節目 등이다. 이 세 부분을 한문으로 기술한 다음, 다시 이 한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붙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첫 번째 전교와 두 번째 거조는 순 한문 문장인데 비해, 세 번째 절목에는 이두吏讀가 들어갔고, 또 이 법령의 아홉 개 항목 중에는 한자 단어에 한글 뜻풀이를 함께 붙인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문에 이두로 토를 달고, 당시에 민간에서 통용되던 머리와 관련된 한글 용어를 함께 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부분인 전교의 내용은, 여자들이 머리에 땀은 머리띠를 얹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가 이룩한 여러 가지 뚜렷한 공적 가운데 어떤 것은 철저하게 시행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다리를 얹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가체加髻, 다리를 얹는 일의 풍습은 사치를 조장하여 갖가지 폐단의 원인이므로, 부녀자들이 다리를 머리에 얹는 일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정조는 1788년 10월 3일에 이 명령을 내리면서 그 시행 일자를 못 박았는데, 서울은 동지인 11월 24일까지이고, 지방은 이 명령이 도착한 날로부터 20일이라고 했다.

조선의 법령은 조금만 오래되면 해이해진다는 말이 있었다. 영조나 정조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다.⁰⁴ 정조는 “우

04 “우리나라의 법령이 시행되지 않음은 오로지 자주자주 변경하게 되기 때문이다.”(영조5년 9월 10일)

“우리나라는 법령이 조금만 오래되면 번번이 해이해지곤 하니”(정조12년 9월 29일)

“우리나라의 인심은 고상(故常)에 익숙해져 새로운 법령을 내리기만 하면 마구 이익을 제기하여 일을 미처

리나라의 습속은 법령이 한 번 공포될 때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고 말들을 해댄다”라고 말하고, “명령이 내려지면 행할 뿐이지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니, 금석^{金石}은 부서질 수 있어도 이 금령은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사대부 집안 여성의 다리를 엮는 일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조의 명령에서 특이한 점은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다. 다리를 머리에 더하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인데, 처벌은 당사자인 여성들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장에게 내리게 되어 있었다.

두 번째 부분 거조는 이 법령이 나오기까지 신하들이 임금에게 아뢴 내용인데, 거조를 통해 이 법령이 나오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우정규가 다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린 것에 대해 논의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한 바가 있었는데, 1788년 10월 3일 신하들로부터 그 논의한 내용을 들었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은, 영조 때 다리의 폐단을 없애지 못한 까닭은, 그 대신할 것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제 그 대신할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었으니, 다리의 폐단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좌의정 이성원^{李性源}은, 다리의 폐단은 지금 눈앞의 고질적 폐단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다리의 폐단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장 자세하게 진달했다. 그는 다리를 장만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밭이나 집을 파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커다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금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제공은 다리를 머리에 엮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우선 내리고, 다리를 대신

시작하지 아니하여 폐단이 뒤따르니”(정조2년 9월 10일)

할 것은 다음에 알려주면 된다고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내일 미루다가 끝내 일을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세 명의 의정議政의 의견을 들은 정조는, 그 자리에 참석한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예조판서 이재간李在簡, 이조판서 정창순鄭昌順, 형조판서 이병모李秉模의 의견도 차례로 들었다. 서유린은 다리를 대신할 것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재간은 임금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였다. 정창순은 다리를 대신할 것이 필요하지만, 다리의 폐단이 크므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병모는 대신할 것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했다.

이상 일곱 명의 신하로부터 각각의 의견을 들은 정조는, 우의정 채제공의 말이 가장 적확하다고 했다. 그리고 영조 때 다리를 없애는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역적 홍인한洪麟漢 때문이라고 말하며, 홍인한이 다리 대신 족두리를 쓰게 한 영조의 명령을 어떻게 뒤집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홍인한이 족두리는 대궐에서 쓰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조의 명령을 폐지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조의 주장이었다. 홍인한은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워서, 집안의 여자들이 다리에 막대한 돈을 들였다고 했다. 그리고 홍인한은, “사치를 없애고 다리를 버리라는 금령을 마음속으로 항상 불평하다가 끝내는 이렇게 저지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정조는 말했다. 이렇게 홍인한의 일을 말하는 것은, 후세에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 번째 부분인 절목은 이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절목의 내용은 1788년 10월 3일 비변사에서 올린 ‘가체신금절목加軀申禁節目’과 같은 내용이다. 이 법령의 구체적인 항목을 기술하기 전에, 먼저 영조 때 사치를 금지하기 위해 다리를 머리에 얹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밝히고, 홍인한 때문에 이 시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말했다. 그리고 정조가 신

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다리를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다시 알리고, 절목 아홉 가지를 나열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족士族의 처첩妻妾과 여항閭巷의 부녀자가 남의 머리로 만든 다리를 머리에 얹는 것이나 자기의 머리를 머리에 얹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 ② 다리를 올리는 것 대신으로는 족두리를 쓴다. 남자머리와 사양머리는 쓸 수 없다.
- ③ 족두리에 치장을 할 수 없다.
- ④ 명부命婦에서 항상 착용하고 혼인 때도 쓰는 於由味어유미와 巨頭味거두미는 금지하지 않는다.
- ⑤ 사치스러운 족두리를 세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물건을 매매하는 것도 금지한다.
- ⑥ 상인常人과 천인賤人 그리고 공사천公私賤은 자기 머리를 길러 얹는 것은 허락한다. 그러나 다리를 쓰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궁중의 하급 여종들은 자기 머리를 길러 얹은 위에 가리마를 써서 각각의 등급을 표시한다.
- ⑦ 서울은 동지, 각 지방은 이 명령이 도착한 후 20일까지 이 명령은 따를 것.
- ⑧ 기한이 지난 후에 명령을 어기는 자는, 적발되는 대로 그 가장을 호되게 다스린다.
- ⑨ 미진한 것은 추후에 마련한다.

4. 『가채신금사목』에 나타나는 각종 머리모양

『가채신금사목』에는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의 두 가지가 실려 있으므로, 당시의 머리모양을 한자와 한글로 어떻게 표기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절목節目的 한문 부분에는 한자단어에 한글로 뜻을 함께 적어놓은 것도 여러 군데에 나온다. 먼저 한자단어에 한글로 뜻을 붙여놓은 것을 보기로 한다.

- ① 編髻加首 썸머리
- ② 本髮加首 밋머리
- ③ 娘子雙髻 낭즈머리
- ④ 絲陽髻 사양머리
- ⑤ 編髮後髻 본머리의저근첩지와돌넉을조금너허두가뉘으로썸코싯출당기로가마을녀써거쓰지미라
- ⑥ 於由味 어유미
- ⑦ 巨頭味 거두미
- ⑧ 貼髻 첩지
- ⑨ 加髻 썸머리
- ⑩ 加里 가리마

한문 문장에는 이상 열 군데에 한글로 뜻풀이를 써 넣었는데, 이 한문 대목을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기로 한다.

- ① 編髻加首 : 돌넉 짜하 머리의 언는 것
- ② 本髮加首 : 밋머리로 언는

- ③ 娘子雙髻 : 두 가뚝을 각각 동굴개 스런 낭즈머리
- ④ 絲陽髻 : 스양머리
- ⑤ 編髮後髻 : 본머리의 저근 첩지와 들늑를 조금 너허 두 가뚝으로 싹코 싹출
당기로 가마을너 써거 쪼지게 호오되
- ⑥ 於由味 : 어유미
- ⑦ 巨頭味 : 거두미
- ⑧ 貼髻 : 첩지
- ⑨ 加髻 : 쏘머리
- ⑩ 加里尓 : 가리마

이밖에 구체적으로 머리모양을 적시한 한문 문장을 한글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예문 전체를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

- 加髻之禁一言而蔽之曰亟可復也 : 쏘머리 금녕은 흔 말노 덩허 곴오되 썰니
회복호리라 호노니
- 曰祛髻也 : ㄹ론 거테쏘머리업시호미라
- 最是宜革而易祛者莫勝於加髻故曰禁加髻卽明聖志紹盛烈之一端云 : 가
장 고치미 맞당호고 업시호미 쉬온 자는 쏘머리에서 나온 거시 없는 고로,
곴오되 쏘머리를 금호믄 곳 성인의 싹을 붉히웁고
- 大抵加髻之爲樣見於禮經乎法書乎 : 대저 쏘머리 모양 되오미 네경의 뵈얏
느냐 법서의 뵈얏느냐
- 始也緝髮之容便成重首之飾爭相誇大滋致翔貴 : 비로소 매 터럭을 싹는 의

용이 든든 머리를 덩히 너겨 꾸미미 되어 과대자랑^한고크게 호미라호를 듯토아 숭
상^한야 점점 상귀^들넌 감시귀^하다말이라호매

- ・國中婦女加髻一切革祛髻專爲祛奢: 국등 부녀의 쓴머리를 일절이 업시
호노니 쓴머리 업시홈은 전혀 사치 업시키를 위호미니
- ・凡厥臣僚之立予朝者孰敢更以加髻一事煩聞乎: 므룻 그 신료들이 나의 도
등의 섯는 재 귀 감히 다시 쓴머리 일스로써 번거히 들너리오
- ・上曰禹禎圭疏中髻髻一款有爛商回啓之教矣其果何以爲之耶: 상이 굴으
사디 우정규의 소듬에 쓴머리 일관을 난만히 상의^한야 회계^한란 하교 있더
니 그 과연 엇지^한엿^는뇨
- ・金致仁曰髻髻之弊: 김치인은 가로디 쓴머리 폐를
- ・上特下傳教嚴禁髻髻可代者亦爲明教: 우호로 겨오셔 특별이 던교를 느리
오사 쓴머리를 엄금^한오시고, 그 가히 덕신홀 거슬 쏘흔 불히 마르치신즉
- ・李性源曰髻髻一事實爲目今痼弊: 니성원은 굴오디 쓴머리 흔가지는 실노
목금의 고폐 되오니
- ・蔡濟恭曰臣於髻髻事業欲一陳所懷: 채제공은 굴오디 신이 쓴머리 일의 임
의 흔번 품은 바를 베프고져 호오디
- ・盖今莫大之弊蔑有加於髻髻: 대개 즉금 막대^한은 폐 쓴머리의서 더^한 니
업는지라
- ・有子娶婦者以其不得爲髻髻婚嫁六七年不得行見舅姑之禮: 아들 이서 며
느리를 취흔 재 그 시러곰 쓴머리를 하지 못^한므로써 혼^한연 지 늑칠 년의
시러곰 구고 보느네를 형치 못하야
- ・使一國之內不復戴髻髻: 윈 나라 안^한로 하여곰 다시 들너를 니지 아니케
하시면

- 髻髻之禁到今申明孰敢曰不可 : 쏘머리 금령을 이제 니르러 거듭 불히오시면
- 先講代用之制仍著禁髻之令 : 몬져 디신히야 쓸 법제를 강구하고 인히여 들
니 금히는 념을 펴오미
- 髻髻之弊不可及今變通 : 들니 폐는 가히 이제 미쳐 변통 아니치 못하올지라
- 婦女之論亦心無異髻髻之當禁 : 부녀의 의논이 쏘흔 반드시 다르미 업슬지
라, 들니의 맛당이 금히기논
- 雖以加髻一事言之大其制修其飾高其髻 : 비록 쏘머리 혼 일노 니를지라도
그 제도를 크게 하고 그 꾸민 거슬 사치히 하고 그 쉼은 거슬 노피하야
- 加髻之出未踰數十年 : 쏘머리 나쁜 수십 년이 넘디 못흔지라
- 貼髻첩지加髻머리之制 : 첩지와 쏘머리 제도는
- 并許令以本髮加首而貼髻첩지加髻머리之制各別禁斷爲白遣 : 다 히여곰 밋
머리로써 언끼를 허하고, 첩지와 쏘머리 제도는 각별이 금단하옵고
- 本髮加首之上戴以加里가리마以示區別等威之意爲白乎矣 : 밋머리 우희
가리마로써 등급 구별하느 뜻을 뵈오되

『가체신금사목』에 나타나는 머리모양과 관련된 한글용어는, 절목에 나오
는 쏘머리, 밋머리, 낭즈머리, 사양머리, 본머리, 첩지, 들니, 어유미, 거두미 가
리마 등 아홉 가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글용어는 한자용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를 도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⁰⁵

한글용어	한자용어
땀머리	編髻加首, 髻, 加髻, 髻髻
밑머리	本髮加首, 本髮

05 아래에서는 머리모양의 고어 표기 쏘머리, 밋머리, 낭즈머리, 사양머리, 본머리, 첩지, 들니, 어유미, 거두미 가
리마 등을 현대표기 땀머리, 밑머리, 낭자머리, 사양머리, 본머리, 첩지, 달내, 어유미, 거두미, 가리마로 한다.

한글용어	한자용어
낭자머리	娘子雙髻
사양머리	絲陽髻
본머리	
칩지	貼髻
달내	編髻, 髻, 髻髻
어유미	於由味
거두미	巨頭味
가리마	加里𐄂

이 표를 보면, 낭자머리, 사양머리, 칩지 어유미, 거두미, 가리마는 한글용어에 대응하는 한자용어가 하나이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땀머리, 밀머리, 달내⁰⁶는 여러 가지 한자어가 있어서, 이 한글용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땀머리’를 보기로 한다. ‘편채가수編髻加首’를 ‘땀머리’라고 했는데, 절목의 한글 번역에서는 “달내 땡아 머리에 얹는 것”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니까 편채編髻는 달내 땡은 것이고, ‘가수加首’는 머리에 얹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땀머리에 대응하는 한자로는 ‘髻’, ‘加髻’, ‘髻髻’ 등이 더 있는데, ‘髻’는 ‘달내’라는 의미이므로, ‘加髻’는 달내를 더하는 것이고, ‘髻髻’는 달내를 더해 머리를 높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밀머리’인데, ‘本髮’과 ‘本髮加首’ 두 가지 한자가 있다. ‘本髮加首’를 “밀머리로 얹는”이라고 했으므로, ‘本髮’은 밀머리이고, 본머리라고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달내’에 대응하는 ‘髻’, ‘編髻’, ‘髻髻’는 앞에 ‘땀머리’에 나온 것이므로, ‘달래’와 ‘땀머리’는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06 현재 ‘달내’의 표준어는 ‘다리’인데, 『가체신금사목』에는 ‘달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달내’라고 쓰기로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리의 설명을 보면, “예전에, 여자들의 머리술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땀머리. 𐄂월내, 월자”라고 되어 있다.

5. 결론-가체^{加髻}와 사양머리

세책 『춘향전』에 나오는 ‘허튼머리’와 ‘사양머리’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했으나, 필자는 이 글에서 허튼머리의 의미는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 허튼머리라는 표현은 소설이나 민요 등의 통속문학 작품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어떤 머리모양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혹시 『가체신금사목』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으나, 이 책자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각종 사전에 실려 있는 새양머리^{새양머리}의 뜻풀이와 『춘향전』의 머리모양이 같은 것인지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다. 『춘향전』의 사양머리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조금 얘기해보기로 한다.

『가체신금사목』에 ‘사양머리’나 ‘스양머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한자 음차^{音借}는 ‘사양계^{絲陽髻}’이다. 그리고 세책 『춘향전』에서는 ‘사양머리’나 ‘사향머리’라고 했다. 이를 통해, 현재 표준어로 되어 있는 ‘새양머리’의 원말은 ‘사양머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새양머리’ 또는 이를 줄여서 ‘생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인지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사전에 미혼녀가 예복을 입을 때 하는 머리가 새양머리라고 말하는 근거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양머리는 궁중의 나인들의 머리모양이라고 한 근거가 정확한 것인지도 알아볼 필요는 있다.

세책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그네를 뛰러 나갈 때의 머리모양을 사양머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예복^{禮服}을 입을 때 하는 머리모양이라는 사전의 정의도 정확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가체신금사목』에서 ‘사양머리’를 설명한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사양머리는 혼인 전의 머리모양이라는 것뿐이다. 『가체신금사목』을 반포하기 직전에 정조는 신하들과 ‘낭자머리’에 관한

논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정조는 낭자머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낭자계의 제도는 남자의 쌍동계(雙童髻)와 같으니 이는 계례(笄禮)를 하기 전의 장식이다. 두 가닥으로 머리를 뿔아서 끝을 말아 구부려서 고리 모양을 만들고 비녀로 꽂고 끈을 드리운다. 『일성록』, 1788.10.6

낭자계의 본 제도는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서리서리 엮어 양쪽에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비녀를 가지고 양쪽 고리를 꿰뚫는 것이니 바로 혼인한 여자가 장식하여 묶는 것인데, 이번 절목 가운데 이른바 ‘시집가기 전의 제도이니 써서는 안 된다’한 것이 이것이다. 『일성록』, 1788.10.7

이렇게 낭자머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놓았지만, 낭자머리와 함께 들어있는 사양머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낭자머리와 사양머리가 어떤 관계인지 『가채신금사목』의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채(加髻)’라는 용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단히 얘기하고 글을 마치기로 한다. 현재 ‘가채’라는 용어는 대중에게도 익숙한데,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이 머리에 ‘가채’를 쓰기 때문이다. 특히 가채를 착용하는 고통을 얘기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그런데 ‘가채’를 머리에 얹는 가발로 아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가채를 머리에 쓴다”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다. 한두 가지 예를 보면,

머리카가 긴 것을 자랑으로 삼아 가채(加髻)를 더하였으며

연전에 가체加髻를 엮지 못하도록 거듭 금령을 내린 것은, 실로 검박함을 밝힌 선조先朝의 뜻을 따라 사치를 숭상하는 일세의 풍습을 없애려는 데서 나온 일입니다. 年前加髻申禁之命寔出於遵先朝昭儉之意祛一世尙侈之習

이라고 하여, “가체를 더한다”든가, “가체를 엮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가체加髻’는 ‘체髻를 더한다加’라는 의미로, 자기의 본 머리에 다리를 더 넣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체는 명사라기보다는 동사로 보는 것이 낫다. 물론 “다리를 더하는 것”이라는 명사적 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체를 머리모양의 하나로 볼 수는 없다.

『가체신금사목加髻申禁事目』은 “다리를 더하는 일을 거듭 금지하는 규정”이다. 거듭 금지한다는 말에서 이미 이 정책은 영조 때 실패했음이 드러난다, 정조가 『가체신금사목』을 반포한 이유는 사치의 풍조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그렇게 단순히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사치를 막는다는 큰 명분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궁중의 제도를 따라하는 사대부들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 같은 것이다. 가체를 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 집안의 남성을 처벌하는 규정이 그런 의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가채신금사목(加毳申禁事目)』, 178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남원고사』,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 소장본

『춘향전』,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춘향전』, 일본 동경대학교 소장본

한국고전연구원 한국고전종합DB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2. 단행본 및 논문

장대민·권승주, 「英·正祖代의 加毳禁止令에 關한 考察」, 『文化傳統論集』 12,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2004.

권귀민, 「조선후기 여성인물화에서 본 머리 형태의 변화 연구」, 『동양예술』 34, 한국동양예술학회, 2017.

안인희·유충옥, 「소설 ‘춘향전’을 통해 본 조선 후기의 복식, 머리모양, 화장의 계층별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4-1,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03.

이은주,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 『복식』 58-3, 한국복식학회, 2008.

송미경, 「멋스러움과 단아함을 위한 치장」, 국사편찬위원회 편,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두산동아, 2006.

Abstract

A Study on Women's Hairstyl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Yoon-suk*

Most of the contents in the novel are highly likely to be 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s of the time when the novel was created. It can be also said that the contents of the novel show the actual aspects of the author's time. The various hairstyles which appear in *Chunhyangjeon* represents the actual hairstyles of the time. If a researcher specialized in studying hairstyl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nts to examine the hairstyles of the early 19th century, *Chunhyangjeon* will be the essential material that one should look into. I have annotated and published several versions of *Chunhyangjeon*, but the exact meaning of the 'heoteunmeoli' and 'sayangmeoli', a certain female hairstyle which appears in this novel was never clear. In this article, I examined several materials, including '*Gachesingeumsamog*(加髻申禁事目 Regulations repeatedly banning the addition of wigs)', to specify those two hairstyles. Although I could not clarify actual details of 'heoteunmeoli', I discovered that 'sayangmeoli' was a different hairstyle from how it is described in today.

Keywords *Chunhyangjeon*(*A Story of Chunhyang*), *Gachesingeumsamog*(加髻申禁事目 Regulations repeatedly banning the addition of wigs), Hairstyle, Heoteunmeoli(It refers to a bountiful hairstyle, but the exact meaning is not known), Sayangmeoli(braided hair in two pigtails)

이 논문은 2023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6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Yonsei University.